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용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418 발의연월일: 2024. 11. 11.

발 의 자:유용원·임종득·김기웅

강선영 • 이종배 • 성일종

김용태 · 강대식 · 임이자

김재섭 · 권성동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우수한 군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관후보생이 될 예 비장교후보생 등에게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단기복무 부사 관에게는 장려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장려금과 장려수당은 단기복무 지원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으로서 그 취지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장려금은 장교로 임용되기 전의 사관후보생에게 지급되므로 장려금 전액이 비과세로 지급되는 반면 장려수당은 부사관으로 임용된 사람에게 지급되므로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이 지급되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각급 학교의 재학생에게 등록금을 지원하고 장교나 부사관으로 임용된 후에 의무복무기간을 가산하여 복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군 가산복무 지원금과 장려금은 취지와 성격이다름에도 불구하고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장려금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어 문제가 있음.

이에 단기복무 지원금 제도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단기복무부사관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 제도를 폐지하고 장려금으로 일원화하는 한편, 장려금의 수혜 대상을 단기복무 부사관, 부사관후보생과정의학생 등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또한 군 가산복무 지원금과 장려금을 중복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수한 인력이 군으로 유입될 수있는 유인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62조의2).

법률 제 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사관후보생과정"을 "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과정"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현역 또는 예비역의 병으로서 단기복무 장교 전형에 합격하여 해당 분야의 정하여진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
- 5. 제6조제7항에 따른 단기복무 부사관
- ② 제1항에 따른 장려금은 동일한 대상자에 대하여 1회만 지급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2조의2(장려금의 지급) ① 각	제62조의2(장려금의 지급) ①
군은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장려	
금을 지급할 수 있다. <u>다만, 제</u>	<u><단서 삭제></u>
62조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	
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병역법」 제57조제2항에	2
따라 실시하는 학생군사교육	
단 <u>사관후보생과정</u> 의 학생	<u>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u>
	<u>생과정</u>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u><신 설></u>	4. 현역 또는 예비역의 병으로
	서 단기복무 장교 전형에 합
	격하여 해당 분야의 정하여진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
<u><신 설></u>	5. 제6조제7항에 따른 단기복무
	부사관
<u><신 설></u>	② 제1항에 따른 장려금은 동
	일한 대상자에 대하여 1회만
	지급한다.

<u>②</u> (생 략)

<u>③</u> (현행 제2항과 같음)